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 근거 마련〉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47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5.
3. 회부연월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종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통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66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교직원----- -----교직원----- ----- -----교직원----- ----- -----.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사립학교법」 제70조의4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직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당연퇴직 사유¹⁾가 발생하면 사무직원은 당연퇴직하게 됨.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감사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형벌로 인한 당연퇴직자의 계속 근무 현황”과 같이 000 등 72명은 당연퇴직대상인데도 당연퇴직되지 않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4년을 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1)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형벌로 인한 당연퇴직자의 계속 근무 상위 현황>

(단위: 개월)

소속기관	형 확정일	죄명	형벌사항	최종 근무월	형 확정 이후 근무월수
사립대학교	99. 4.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3. 5.	288
사립대학교	00. 9. 15.	배임수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2. 2.	256
사립대학교	03. 4. 9.	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8. 9.	184
사립대학교 병원	10. 1. 29.	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3. 10.	164
사립유치원	16. 4.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 3.	164

자료: 교육부

□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사무직원의 퇴직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 연금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되는 조항에 따라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 수사사실을 임용권자가 알지 못해 부당하게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사실 등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비위 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대상인 사무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퇴직급여 감액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2025년 6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조사 시 해당 사실이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법률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은 각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은 동법 제66조의3을 준용하여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도 수사사실 통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개정안은 동일 취지라 하겠음.

<현행 수사사실 개시·종료사실 통보 규정 현황>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준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②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 다만, 입법체계면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은 교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5장 부칙에서 사무직원에 대하여 규정하여 법체계상 교원과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제4장의 교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5장 부칙에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 정 의 건
「사립학교법」제70조의8 신설
제70조의8(사무직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은 제6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하위법령의 개정 등 별도의 절차 준비 없이 법률이 공포되면 그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직원 관리 및 직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개정 즉시 시행하여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